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|
| 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~3.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환매조건부 매수</p> |
| 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· 2.(생 략)</p> | 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· 2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수의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<삭 제></p>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 설></p> <p>④(생 략)</p> | <p><u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 |